

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7. 16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도하석 의원 등 10명(강한곤, 김기열, 황국주, 권숙자, 최홍린, 박종길, 이선주, 김장관, 고명욱)
- 발의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7. 16.)

2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 사고 및 무단 방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사업 및 교육홍보 내용, 행정조치의 명확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와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 및 제5조)
-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(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)
- 시범지역 지정·운영 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-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법적 근거 정비 및 조치에 필요한 비용 징수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)
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-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보완 및 추가(안 제12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, 제35조, 제36조
 -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5조
 -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7. 4.~7. 14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-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추가함.
 - 안 제10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차량으로 적용하여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비용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.
 -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·추가함.

-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안전 계획 수립,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무단방치 금지, 비용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